

	회 장
상근부회장	고치환
김영석	

201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8. 4. 19.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8. 4. 19(목) 11:00 ~ 12:10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30명 중 22명 참석(감사 1인은 정족수 제외)

가. 참석(18명) : 고치환, 부형중, 송옥희, 안근보, 김순효, 박영식, 박정해, 양광호,
이흥기, 양은심, 김문국, 고관용, 김도영, 김효철, 석 건, 양은정,
양창오, 원석철

나. 위임(4명) : 강정숙, 고승화, 임태봉, 김금자

다. 감사(1명) : 고두승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사무국장의 성원보고 후 고치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다. 우리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의 발전이 곧 제주사회복지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하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전차회의록 낭독을 지시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의 장 : 전차회의록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는지 참석회원들의 의견을 묻다.

- 부형종 부회장 :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다.

- 의 장 : 부형종 부회장의 원안동의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감사보고

- 의 장 : 고두승 감사에게 아라어린이집 2017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요청하다.

- 고두승 감사 : 아라어린이집 2017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하다.

- 의 장 :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안근보 부회장 : 질의사항이 없으며, 감사보고에 대한 원안동의 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아라어린이집 2017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원안 처리됨을 선언하다.

8.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및 상정

주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7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8년도 제1회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6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8년도 제1회 좋은이웃들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라고 하고, 이상 6가지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들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6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언하다.

- 의 장 :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심의안건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제안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 제6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나.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아라어린이집 이승희 원장, 사회복지협의회 김성건 사무국장,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권미애 부장에게 제1호 ~ 제6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이승희 원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2호 ~ 3호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다.
- 권미애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4호 ~ 제6호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양은심 이사 : 아라어린이집 2017년도 결산자료에 중 예비비와 잡지출의 내역이 세입·세출 결산총괄표와 결산명세서가 서로 상이하게 표시되어 있다. 어떻게 된것인지 묻다.
- 이승희 원장 : 결산명세서 상의 내용을 총괄표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하며 수정하겠다고 하다.
- 김효철 이사 : 양은심 이사가 지적한 사항 외에도 결산액과 증감내역 등 수정되어 져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하며 종합적으로 사무처에서 결산자료를 확인하여 수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다.
- 의 장 : 아라어린이집 결산자료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며 다음부터는 이러한 잘못표기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

겠다고 하다.

양광호 이사 : 아라어린이집 결산자료 중 전입금 내역은 법인전입금인지를 묻다.

- 이승희 원장 : 법인전입금이 맞다고 하며 실제 현금으로 전입된 3백만원을 제외하고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기업체 후원을 연계해줘서 실제로는 1천만원 이상의 전입금 지원효과를 받고 있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법인에서 전입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된다며 앞으로도 법인차원에서 아라어린이집에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하다.
- 김문국 이사 : 아라어린이집 결산자료를 살펴보니 교직원 연수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도하지만 책정된 예산도 절반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아라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교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직원 연수비와 같은 직원 복지에 해당하는 예산을 좀더 많이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다.
- 이승희 원장 : 최근 어린이집 교직원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고 이사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교직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사회복지협의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들이 삭감되고 있다. 공공요금과 같은 운영비들은 전년

도 집행예산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져야 하는데 올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들이 조정되어지는 것은 좋지않은 것 같다고 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당초 예산편성시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2017년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8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조정하기위해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예산들을 운영비로 조금 여유있게 편성했었다. 그 예산들을 조정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이음일자리 사업 추가경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인원이 표기되어 있지않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리운영비성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 목적에 맞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현재 전체 예산의 75%정도가 사업참여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하다. 당초 사업 참여자 중 중도 포기자와 월간 기준시간 미참여자 들에 대한 지원예산 삭감이 불가피하여 조정하다보니 조금 관리운영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하며 이사님들의 지적처럼 사업목적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이음일자리 사업 중 병원도서관 조성경비는 어떠한 내용인지 묻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이음일자리사업으로 도서관 사서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인력

파견을 위한 수요조사시 한마음병원과 S-중앙병원에서 병원내
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새롭게 병원내 도서관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다. 또한 이 도서관에는 이음일
자리 사업 참여자가 도서관 사서로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
영하고 있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환자들과 보호자, 병원근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안 중 직제규정개정안에서 대외직
명으로 3년이상 근무자에대한 대리 직급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현재
일반직원이 승진에 필요한 근무기간은 얼마이며 또한 대리 대외직명
은 특정 업무분야에만 해당하는것인지 묻다.
- 김성건 사무국장 :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상 5급직원이 2년이상 근무하면
승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직급별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근무경력이 많아도 승진이 안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근속자
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3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대외직명
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 대외직명은 특정업무에만 해당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오래 근무하지만 승진의 기회가 없는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
도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하다.
- 김효철 이사 :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안 중 여비규정 개정안에서 근무

지내 출장에 대하여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더라면 앞으로 지급할 계획인것인지 묻다. 또한 근무지 내 출장이지만 서귀포 출장 시 부득이 숙박을 해야할 경우 현재 여비규정에는 없는데 숙박비를 지급할것인지 묻다.

- 김성건 사무국장 : 현재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형편상 근무지내 출장에 대해 여비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이사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근무지내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라는 강제 규정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자구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다. 그리고 근무지 내 출장 중 부득이 숙박을 해야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비규정 제11조(여비의 조정)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들을 위해 규정상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규정상 지급하게 되어있다면 지급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라도 지급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여비규정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것도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는 여비를 지급하거나 하지않는 등의 직원들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관리자 입장보다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직원들이 마음껏 출장을 다니며 당당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다.

- 안근보 부회장 :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정해 이사 : 타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것 같다고 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여비규정 중 제7조(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는 지급한다라고 되 있는 강제규정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주시면 다음번 이사회때 세부지급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또한 김효철 이사님의 건의하신 근무지 내 출장 중 부득이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11조(여비의 조정)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 고관용 이사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니 이월금이 3천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 늘어났고 또한 이 이월금들이 예비비로 보내지면서 예비비가 총 6천만원 이상이 증액되고 있다.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히 사업비로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권미애 부장 :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복지관에서 향후 사용할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이 본예산 편성시 이월금으로 편성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적립금 성격의 예산들이 예비비에 편성되다보니 예비비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상황이라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예비비가 전체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된다. 예비비가 적절하게 직원들 복지나 환경개선,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어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적립금으로 생각한다면 적립금 항목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기예금 형태 적립하여 이자 수익 등도 발생하므로 기관차원에서도 좀더 이점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수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타 사회복지법인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향후 발생할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비 항목에 예산을 모아두는 형태가 많다. 물론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있다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다.

- 부형종 부회장 : 안건에 대한 더이상의 질의가 없는 것 같으며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처리를 요청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제2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8년도 제1회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 제6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8년도 제1회 좋은이웃
돌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제1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7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명세서와 총괄표의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제3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
정안은 여비규정 중 제7조(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는 지급한다라고
되었는 강제규정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여비
규정 제11조(여비의 조정)에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
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9. 폐 회

- 의 장 :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부형종 부회장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들 폐회를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8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2:10)

2018년 4월 19일

회 장 고 차 환

부 회 장 부 형 종

송 옥

안 근

이 사 : 김 순

박 영

박 정

양 광

이 흥

양 은

김 문 국(휴원)

고 관

김 도 영

김 효

석

양 은 정

양 창

원 석

확 인 자 : 고 봉

기 록 : 김 성